

직원인사위원회규정

공포 제2026-3호(개정 2026. 7.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 소속 직원(계약직 등을 포함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제2조(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직원인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7.)

②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교무위원과 2인의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3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학위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1.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전보 및 보직변경 제외)(개정 2026. 7. 24.)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제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본 대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보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임명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임명일로부터 기산하며, 임기가 지난 위원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전보 및 보직변경에 관한 사항도 이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